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저널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3/ 12 통권 1718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2024 사업연도 귀속 법인결산 회계해설과 법인세 신고사·세무 조정계산서 작성사례 최종점검표(Checklist)」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컨설팅

- 법인세 신고 및 조정계산서 작성관련 공통점검사항
 - 일반 절차 및 세무신고 관련서류 범위
 - 재무계산상 손금인정받기 위해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결산조정)해야 하는 사항
 - 2024년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2023년과 달라진 핵심요약
- 2025. 3월의 법인세 신고로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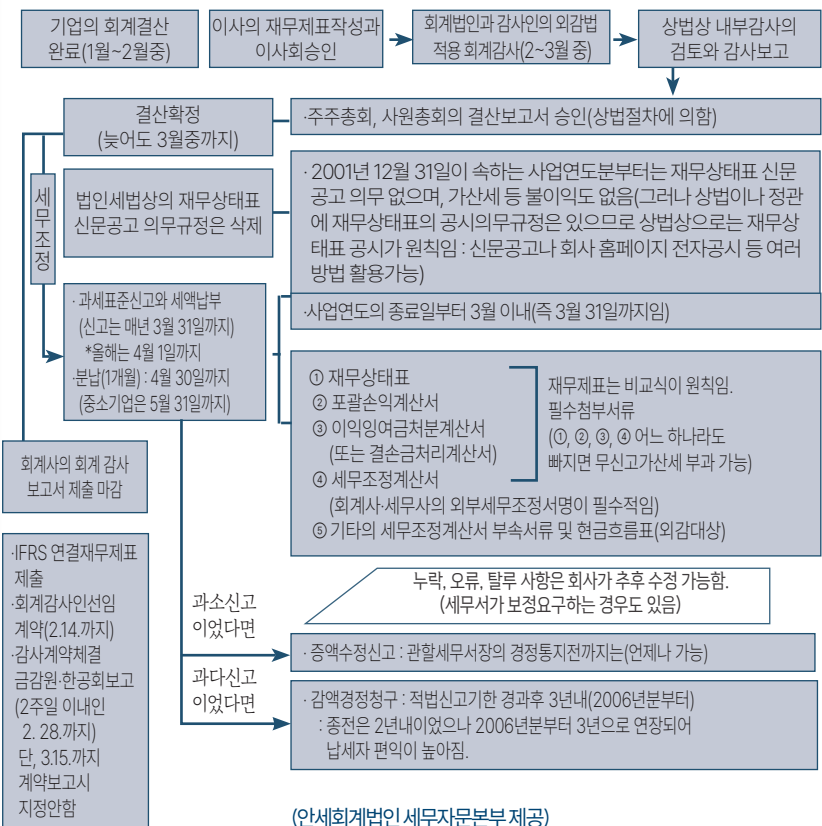
✓ 조세전문가의 세무컨설팅

- 202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사례 해설
 -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및 가산세관련 보완서류(법인세법 제116조)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사업연도 2024. 1. 1~12. 31)
 - 가지금급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 조정 개요
 - 조정사례와 구체적 서식작성실무
-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 2024년 12월말 세무결산환율표

재경팀 업무지침

- ①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제와 각종 재무보고서류의 작성·세무조정신고·납부절차 관계도 개요
- ② 2024년 사업연도 법인결산에서 당장의 법인세절세와 나중에 과세이연하기 위한 각종 점검내용 요약

Flowchart of Accounting report and corporation tax return (see page 1)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18호 / 주간 11호

2025. 3. 12.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문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2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안내(국세청 자료)

긴급시사해설	세액공제·감면 및 준비금 등 각종 법인세 절세혜택항목 점검표	2
세무컨설팅 I	법인세 신고 및 조정계산서 작성관련 공통점검사항	8
세무컨설팅 II	202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사례 해설	24
	1.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및 가산세관련 보완서류	25
	2.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사례	27
	3.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개요	29
	4.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30
	5. 퇴직연금 부담금 등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32
	6.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33
	7.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36
	8.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38
	9.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39
	10. 업무무관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39
	11.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	41
	12.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 특례	45
	13.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46
	14.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48
	1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사례	51
	16. 조정항목별 소득처분방법과 구체적 사례	53
	17.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55
	18. 최저한세 조정계산 사례	56
	19.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사례	56
	20. 2024. 12. 31일자 법인결산과 세무신고를 위한 국세청 고시 회계·세무환율(재정환율)	60
	2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61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 서울외국환중개(주)	64



세액공제·감면 및 준비금 등 각종 법인세 절세혜택항목 점검표

1. 법인세 면제 및 감면세액 계산방법 : 매년 세액 면제·감면·공제신청서 제출 필수

구분	면제·감면 소득의 범위	면제·감면의 방법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6)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18.5.29. 이후 수도권 내 창업한 청년창업기업 포함),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 (기본감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 '18.5.29. 이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 : 5년간 100% * '18.5.28. 이전 청년창업 중소기업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 50% * '18.1.1. 이후 창업한 대상기업 중 신성장 서비스업 영위기업 :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 50% * '18.5.29. 이후 창업한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 기업 : 수도권 외 : 100%, 수도권 내 : 50% - (추가감면) 전년대비 고용증가율×1/2(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충족)																																
②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7) * 2005. 1. 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분부터 본점기준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	-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소재지</th> <th>업종</th> <th>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소기업</td> <td rowspan="3">수도권</td> <td>제조업 등</td> <td>20</td> </tr> <tr> <td>도소, 의료업</td> <td>10</td> </tr> <tr> <td>통관대리 등</td> <td>10</td> </tr> <tr> <td rowspan="3">중기업</td> <td rowspan="3">수도권 외</td> <td>제조업 등</td> <td>30</td> </tr> <tr> <td>도소, 의료업</td> <td>10</td> </tr> <tr> <td>통관대리 등</td> <td>15</td> </tr> <tr> <td rowspan="3">중기업</td> <td rowspan="3">수도권</td> <td>지식기반산업</td> <td>10</td> </tr> <tr> <td>제조업 등</td> <td>15</td> </tr> <tr> <td>도소, 의료업</td> <td>5</td> </tr> <tr> <td></td> <td></td> <td>통관대리 등</td> <td>7.5</td> </tr> </tbody> </table> * (한도) 기본한도 1억원-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1인당 × 5백만원	구분	소재지	업종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	제조업 등	20	도소, 의료업	10	통관대리 등	10	중기업	수도권 외	제조업 등	30	도소, 의료업	10	통관대리 등	15	중기업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10	제조업 등	15	도소, 의료업	5			통관대리 등	7.5
구분	소재지	업종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	제조업 등	20																															
		도소, 의료업	10																															
		통관대리 등	10																															
중기업	수도권 외	제조업 등	30																															
		도소, 의료업	10																															
		통관대리 등	15																															
중기업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10																															
		제조업 등	15																															
		도소, 의료업	5																															
		통관대리 등	7.5																															
③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①,③)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 -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5%																																
④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의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 소득 발생 후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⑤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20)	-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	-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감면
⑥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면제 (조특법 §21)	- 국가 등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등 - 국가 등이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을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00% 면제
⑦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법 §62)	-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 성장관리권역에 본사가 소재하는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고, 5년 거치 5년간 균등액 이상을 환입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2년은 100%, 그 다음 2년은 50% 감면 * 감면대상소득 : 과세표준×이전 본사근무원 비율
⑧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63)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함에 따른 이전 후 공장소득 * 본사가 함께 있는 경우 같이 이전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6년(4년)은 100%, 그 다음 3년(2년)은 50% 감면
⑨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63의2)	-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 무점포 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본사 이전에 따른 소득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6년(4년)은 100%, 그 다음 3년(2년)은 50% 감면
⑩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64)	-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나주일반, 혁신·김제지평선·장흥바이오 식품·북평국가, 일반·강진·정읍 첨단과학·동함평·세풍일반(1단계)·담양일반·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 기업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 법인세 50% 감면
⑪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66)	- 영농조합법인 * 2014.1.1. 개정시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분을 과세로 전환(20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1,2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월수/12한도)
⑫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특법§67)	- 영어조합법인	- 어로어업소득(3,0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월수/12 한도) - 어로어업소득외의 소득 중(1,2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월수/12 한도)
⑬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특법§68)	- 농업회사법인 * 2014.1.1. 개정시 수입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분을 과세로 전환(20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 : 50억 원 한도 - 부대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감면

<p>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85의6)</p>	<p>- 사회적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p>	<p>-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2년은 100%, 그 다음 2년은 50% 감면 (1억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한도) * 최저한세 적용 제외</p>
<p>⑮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96)</p>	<p>- 내국인이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p>	<p>- 1호 임대 : 30% 감면(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75%) - 2호 이상 임대 : 20% 감면(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50%)</p>
<p>⑯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99의9)</p>	<p>-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하는 기업으로 지정기간 내 창업기업</p>	<p>- 5년간 100% 감면 그 이후 2년간 50% 감면 - 중견·대기업은 다음 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등 2,000만원)</p>
<p>⑰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04의24)</p>	<p>- 내국법인이 국외(개성공업지구 포함)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국내(수도권 밖)로 이전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하고 국외 사업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등 일정요건 충족</p>	<p>① 완전복귀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4개 과세연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개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② 부분복귀 - (비수도권) 5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 3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p>
<p>⑱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8)</p>	<p>-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p>	<p>-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p>
<p>⑲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9)</p>	<p>㉠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해당 구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해당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p>	<p>㉠에 대한 감면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에 대한 감면 - ㉠의 1/2를 각각 감면</p>
<p>⑳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의17)</p>	<p>㉢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업도시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시행자의 해당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p>	<p>㉢에 대한 감면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에 대한 감면 - ㉢의 1/2를 각각 감면</p>
<p>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조의20)</p>	<p>-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p>	<p>-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p>

㉔ 금융중심지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의21)	-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여 해당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2010. 5. 14.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법인부터 적용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㉕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의22)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식품산업 등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㉖ 외국법인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의 법인세 감면 (조특법 §141의2)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 2019.1.1. 이후 지역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입주하는 법인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 감면 (대상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투자누계액 50% + 상시 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근로자 2,000만원)
- 100% 감면기간(최저한세 적용 제외), 그 외 감면기간(최저한세 적용)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어느 법인이나 쉽게 적용가능한 것 발췌함)

구분	관련규정	공제금내역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10	일반법인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30%[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최대 40%(25%+α)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원천기술연구개발× 최대 40%[30%+(매출액 대비 신성장 R&D비중×3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최대 40% [30%+ (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 위 해당·선택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25% ② 당해연도 R&D비용 × 기본 0% + 최대 2%(매출액 대비 R&D 비중의 1/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최대 50% [40%+(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 위 해당·선택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50% ② 당해연도 R&D비용×25%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를 단계적 인하 - 중소기업 졸업이후(유예기간 포함)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
※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13.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 2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 40% ② 당해연도 R&D비용×8%	☞ 중견기업(조특법 §9④)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4.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미만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7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견·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에 구매대금 지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기한 15일내 지급금액 × 0.5% 지급기한 16일~30일내 지급금액 × 0.3% 지급기한 31일~60일내 지급금액 × 0.15% * 세액공제 한도 : 법인세의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세액공제	조특법 §8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연금액×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2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2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등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특법§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5%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대상) ① 사업용 유형자산(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②일부 유형자산(①제외)과 무형자산 (공제방식)기본공제(1/7/12%) +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10%)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3/8/14%) +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10%) (국가전략기술 지원)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15/15/25%)+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1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25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공제(5/10/15%)+추가공제(10/10/15%) * '24.1.1.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23.12.31.이전 발생분은 기본공제를 3/7/10% 적용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20%)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의 합계×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적용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의7	<p>-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아래 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중소기업</th> <th colspan="2">중견기업</th> <th colspan="2">대기업</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h>수도권</th> <th>지방</th>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상시근로자</td> <td>700</td> <td>770</td> <td>450</td> <td>450</td> <td>-</td> <td>-</td> </tr> <tr> <td>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td> <td>1,100</td> <td>1,300</td> <td>800</td> <td>900</td> <td>400</td> <td>500</td> </tr> </tbody> </table> <p>*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대기업 2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3년 적용</p>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450	-	-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450	-	-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p>통합고용세액공제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p>	<p>조특법 §29의8</p>	<p>■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p> <table border="1" data-bbox="611 329 1282 531"> <thead> <tr> <th rowspan="3">구 분</th> <th colspan="4">공제액 (단위: 만원)</th> </tr> <tr> <th colspan="2">중소(3년)</th> <th rowspan="2">중견 (3년)</th> <th rowspan="2">대기업 (2년)</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상시근로자</td> <td>850</td> <td>950</td> <td>450</td> <td>-</td> </tr> <tr> <td>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td> <td>1,450</td> <td>1,550</td> <td>800</td> <td>400</td> </tr> </tbody> </table> <p>* 청년 범위: 15~34세</p> <p>■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p> <table border="1" data-bbox="618 652 1282 746">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공제액 (단위:만원)</th> </tr> <tr> <th>중소</th> <th>중견</th> </tr> </thead> <tbody> <tr> <td>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td> <td>1,300</td> <td>900</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p>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조특법 §30의3</p>	<p>○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 액 × 15%</p>																													
<p>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p>	<p>조특법 §30의4</p>	<p>○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 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액 중 청년(15~ 34세), 경력단절여성 상시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100%,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 원의 사회보험료 50%(신성장서비스업 75%) * 고용이 감소된 경우 잔여기간 공제배제 및 공제세액 납부</p>																													
<p>전자신고세액공제</p>	<p>조특법 §104의8</p>	<p>○직접 신고 : 2만원(납부할 세액 한도) ○세무대리인 대행 : 세무대리인 본인의 소득·법인세 신고 월이 속하 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동안 법인세를 신고 대행한 경우 납세자 1인당 2만원(부가가치세 신고대리에 따른 세액공제를 포 함하여 300만원 한도, 세무·회계법인은 750만원 한도)</p>																													
<p>기업의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p>	<p>조특법 §104의22</p>	<p>○ 취약종목의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해 창단 후 3년간 10% 세 액공제 ○ 장애인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창단 후 5년간 20% 세액공 제 ○ 이스포츠경기부 창단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운영비용 10%세액공 제</p>																													
<p>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p>	<p>조특법 §104의25</p>	<p>○ 수요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0.3% 세액공제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10% 한도</p>																													
<p>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p>	<p>조특법 §104의30</p>	<p>○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 1% +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 × 3%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10% 한도</p>																													
<p>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p>	<p>조특법 §122의4</p>	<p>○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 있는 경우 다음의 하나의 비율을 선 택하여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전년 초과금액의 50% 또는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p>																													
<p>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p>	<p>조특법 §126의6</p>	<p>○성실신고 확인 지급수수료 비용 × 60%(150만원 한도)</p>																													

☞ 동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복되는 경우는 선택 적용 (조특법 §127 참조)



법인세 신고 및 조정계산서 작성관련 공통점검사항

국세청 발간 2025년 법인세신고안내(세무조정신고서 작성요령) 서적에서 핵심사항일부를 발췌하고 일부는 안전조세정보의 발간물(저널·총서·법전)과 혼합 저술함. 법인세신고안내(국세청 발간)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원문(총분량 약 700쪽이며 전부분 클릭하여 참조, 출력 가능) 그대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부

1. 2024년 12월말 법인결산과 세무신고관련 변경·개정·핵심 검토 checklist

1. 일반 절차 및 세무신고 관련서류 범위[미제출시 가산세(해당액의 1% 등) 있음]

- ① 신고납부제출마감일 : 2025년 3월 31일 월요일(회사자기조정이나 ⊕ 회계사·세무사의외조정 모두)
- ②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및 내부거래상계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③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액면가 3억 미만이라도, 보유주 시가합계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라면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
- ④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신고위반 가산세는 40%세율로 중과세 적용하며 (일반과소가산세는 20%), 미납부관련 가산세 하루 10만분의 25(연 9.13%)적용
 - 회계사·세무사의 외부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미신고 간주(법인세법 §60, 동시행령 §97⑦)
- ⑤ 주권상장·코스닥법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변동상황만 주식양도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함.

2. 202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요약(2025 주요 개정 내용 포함)

가. 공통사항

(1) 법인세율

과세표준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 1. 1. ~ 2017. 12. 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0. 1. 1~2011. 12. 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3,000억원 초과	24%	25%	22%	22%
200억원 초과	21%	22%		
2억원~200억원 이하	19%	20%	20%	10%
2억원 이하	9%	10%	10%	

* 조특법 §72의 조합법인 등은 2025. 12. 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다만,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 최저한세율

구 분	과세표준	2014년 이후	2013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09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7%	7%	7%	7%	8%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8%	8%	8%	-	-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9%	9%	9%	-	-
	100억원 이하	10%	10%	10%	10%	11%
	1천억원 이하	12%	12%	11%	11%	
	1천억원 초과	17%	16%	14%	14%	14%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2①)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 §132①②)

* 지역특구(조특법 §12의2 및 121의8, 9, 17, 20~22)에 대한 감면 적용시 100% 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50% 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 조세제도 합리화

①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 범위 확대(법령§12)

◆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발행가액-액면가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함

* '24. 2. 29.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법§18)

◆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

- 배당이 불가능한 재평가적립금 감액을 통한 배당이 익금불산입 제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됨

* '24. 1. 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③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법§18의2,법령§17의2)

◆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는 배당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수입배당금과 유사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자기주식보유법인이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됨

* '24. 1. 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④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법령§72)

◆ 자본을 환급받는 경우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은 종전장부가액에서 감액배당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

액으로 조정함

④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조특법\$100의14~18, 조특령\$100의18)

◆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기업의 주주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¹⁾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²⁾

1) 기업구조혁신펀드(4호)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한하여 허용

*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개인이 아닌 자로 전문투자자 등으로만 구성된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로 투자자의 총수가 100인 이하인 것

2) 최초 출자자(과세) → 모펀드(비과세) → 자펀드(비과세) 허용

* '23.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⑤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조특령\$65)

◆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소득은 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에서 제외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에서 작물재배업 외 소득(5년간 50% 감면)의 범위에서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하여 감면 소득 범위 명확화

* '24. 1. 1.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⑥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조특법\$66~68)

◆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 영농·영어·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등록 요건 규정

* '2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일자리 창출 지원

①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29의8)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세~29세 → 15세~34세로 현실화
-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년)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경력단절여성 100%)
* 청년 범위(①, ②): 15~29세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2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 정규직 전환 인원(1년) × 공제액(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구 분	공제액 (단위 : 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 청년 범위: 15세~34세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②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29의8)

◆ 정규직 전환 지원

- '23.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4.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인원당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 세액공제
- 다만,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 (일몰연장) '24. 12. 31.

③ 고용유지 중소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3)

◆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유도

- 중소기업, 위기지역1)의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2)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아래 금액 공제

- 1)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2)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 공제금액 = (임금감소액 × 10%) + (임금보전액* × 15%)

*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 (일몰연장) '26. 12. 31.

④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조특령§26의8)

◆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운용의 합리화

-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출산휴가자와 대체인력을 각각 1명으로 계산하였으나, 출산휴가자와 대체인력을 상시근로자 1명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개정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한정하여 적용)

* '24. 2. 29.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3) 투자활성화 지원

①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조특법§24)

통합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①사업용 유형자산(건물, 구축물, 차량 등 제외), ②유형자산(① 제외) 및 무형자산 ▪ (공제율) 기본공제(1/3/15%)+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과 동일 ▪ (적용대상) '25.1.1.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 ▪ (공제율 상향) 기본공제 + 추가공제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일 반	1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신성장·원천기술	3	8	14	
국가전략기술사업화	15	15	25		4	국가전략기술사업화	15	15	

②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25의6)

◆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기본공제) 국내외에서 발생한 내국인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공제율 적용('23.12.31.이전 발생분은 10%, 7%, 3% 적용)
- (추가공제) 국내 제작비 비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15%, 중견 대기업은 10% 추가공제 적용

* 전체 촬영제작에 든 비용(조특칙 별표 8의9 제2호)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구 분	공제율		⇒	최대 공제율
	기본	추가		
대기업	5	10		15
중견기업	10	10		20
중소기업	15	15		30

* '24. 1. 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③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조특법§25의7)

◆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 지원

- 중소·중견기업이 2025.12.31.까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의 3%를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
- 동일한 영상콘텐츠에 대해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되는 내국법인(제작사)은 제외

* '24. 1. 1.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④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조특령 별표7의2, 칙 별표6의2)

◆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설 및 세부기술·사업화시설 추가

-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등 8개 기술 및 바이오 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추가

* '23. 7. 1. 이후 R&D 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추가

* '24.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⑥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허용(조특법§13의2)

* 민간 투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

◆ 투자 여력이 있는 법인의 벤처기업 투자 유도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출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5%와 주식 등 취득가액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3%를 합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신설

* '24.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⑦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2)

◆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23.12.31. → '26.12.31.) 연장

(4) 연결납세제도 합리화

①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법법§2, 법법§76의8)

◆ 연결납세 지분을 완화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이상 지배(연결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①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90%이상 지배하는 경우 포함

② 자기주식 제외, 우리스주·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제외

-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새로 90% 이상 지배(연결지배)하는 경우 90%이상 지배(연결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 추가
-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90%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연결지배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규정 구체화

- (간접보유 해당) 연결지배 관계인 내국법인(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 간접보유비율 계산 방법 :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 (연결가능자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 '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법령§120의18)

◆ 연결법인 간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범위에 외국법인의 주식(보유 주식 등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을 추가하여 연결법인 간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 '24. 2. 29.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법법§113)

◆ 납세 편의 제고

- 연결모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구분경리 생략 허용

④ 연결납세방식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법인세법 제19193호 부칙 제15조의2)

◆ 연결범위 변경에 따른 납세자 과세제도 선택권 부여

- 연결대상법인 확대에 따라 '2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납세대상에 포함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법법§76의10① 본문 예외, 단서 조항 미적용)
- 다만, '24.1.1.이후 연결자법인이 새롭게 연결집단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⑤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법인세법 제19930호 부칙 제10조)

◆ 해산 시 신고기한 추가(법법§76의12)

-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

* '24. 1. 1.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⑥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법령§120의17④)

◆ 연결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계산방법 추가(①, ② 중 선택)

① 소득금액이 있는 법인간 소득크기에 비례 배분		② 모든 연결법인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 배분	
(A)* ×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0보다 큰 경우 한정)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합계액(0보다 큰 경우 한정)	(A) ×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연결수정결손금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과 연결수정결손금 합계액(=A)

* (A) : 연결집단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연결 세무조정, 내부거래손의 제거

◆ 연결자법인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의 납부 규정 신설(법법\$76의19③)

-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연결모법인은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연결자법인에게 지급

* '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연결법인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법법\$76의19⑤, 법령\$120의17④, \$120의22, \$120의26)

◆ 연결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이전받은 연결법인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받기 전의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 다른 연결법인에 결손금을 이전한 연결법인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하기 전과 후의 세액 차이에 결손금 이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각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에 해당 연결법인의 주주가 동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연결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①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text{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times \text{조정연결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각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소득 - 각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소득에서 공제된 해당 법인의 이월결손금등 ■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의 합계액 ■ 조정 연결산출세액 :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에 대해 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조정 연결세율 : 조정 연결산출세액 ÷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②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text{연결산출세액} - \text{조정 연결산출세액})$$

$$\times (\text{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text{연결집단 전체 결손금})$$

*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 중 해당 법인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제외

③ 결손금 공제·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①의 금액 + ②의 금액

▶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①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정산금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조정 연결세율)

② 연결모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정산금

= (조정 연결산출세액) ×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연결집단 전체 결손금*)

*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 중 해당 법인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안 이월결손금 제외

▶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완전자법인만으로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② 연결법인 R01-01 외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 '24. 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5) 손금 범위 확대

①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법령§19)

◆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인정 근거 마련

- 임원 또는 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항목에 추가

* '24. 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법령§19)

◆ 손금 인정범위 합리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직접·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던 것을 모든 기업에 대해 손금을 인정하는 한편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손금 산입하도록 개정

* '24. 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104조의33)

◆ 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의 대손위험 완화를 위해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
 모회사의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적용요건) 아래 조건 i ~ iv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i)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지분율 90% 이상)에 지급한 대여금

ii) 회수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

iii)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했을 것

iv)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손금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 손금산입 비율**

* 자산총액 -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부채총액

** 연도별 손금산입 비율 : 매년 10% 상향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	2033년 이후
비율	10%	20%	30%	~	100%

* '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부분부터 적용

④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법령§23)

◆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 손금불산입 대상인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법률상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해 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하고,
- 징벌적 손해배상금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상 손해배상 배수를 기준으로 손금불산입 금액을 산정
-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

$$\text{손금불산입액} = A \times \frac{B-1}{B}$$

A: 지급한 손해배상금
B: 실제 발생한 손해액 대비 손해배상액의 배수 상한

* '24. 2. 29.이후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부터 적용

⑤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령§64)

◆ 국고보조금 간 형평성 제고

- 내국법인이 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보조금 대상 법률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고보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함

* '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⑥ 신탁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령§57)

◆ 공제사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

- 법인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책임준비금 범위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용한 배당준비금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

* '23. 9. 29.부터 시행

(5) 기타

①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법법§120의4, 법령§163의3)

◆ 가상자산거래집계표의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명시

-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와 관련하여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로 ‘분기’를 기준으로만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가 연간 제출하는 자료의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에서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 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연간 제출하는 가상자산거래집계표의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명시

②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법령§10①)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를 공제할 수 있는 법인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조특법§74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에 추가

* '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법령§72)

◆ 법령 명확화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영(0)원

* '24. 2. 29.부터 시행

④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요건 추가(법령§50의2)

◆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 고가의 법인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법인승용차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미부착하는 경우 업무사용금액을 0원으로 함

* '24. 1. 1.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⑤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

◆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합리화(법령§68)

- 조특법§104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대금을 법령§제69①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

입할 수 있음

* '24. 2. 29.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⑥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법령§72⑤)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 법법§제44③(2)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 등이 없는 무증자합병의 경우에는 해당 피합병법인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무증자합병시 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 합병법인 종전 주식의 가액
+ 소각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 현금 등 지급액

⑦ 신탁세제 합리화(법법§5, 법령§3의2)

◆ 신탁재산 과세 합리화

- 신탁소득에 대해 위탁자 또는 수탁자 과세 규정 정비
 - ▶ (원칙)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 ▶ (예외) 수탁자 또는 위탁자 과세
 - ❶ (위탁자 과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설정된 신탁
 - ❷ (수탁자 과세)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신탁으로 위탁자 과세 대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

* '24. 1. 1. 이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⑧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조특법§104의24, 조특령§104의21)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기업으로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적용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에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적용

* '24. 1. 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⑨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조특법§104의24, 조특령§104의21)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업종요건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일 대분류 내에서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업종 요건 완화

* '24. 1. 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⑩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조특법§104의15, §127)

- ◆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광물자원 개발에서 해외자원 개발로 확대
- ◆ (공제대상) 2024.1.1.~2026.12.31.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아래의 투자
 - i)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 ii)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 iii)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 (공제율)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 * '24. 1. 1.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⑩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연장(조특법§28의4)
 -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 ◆ (대상자산)
 - i)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 ii)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 iii)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 2023.1.1.~2024.12.31. 취득분
- ⑪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및 세부사항 규정(조특법§121의33)
 -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이 적용대상이며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를 감면
 - ◆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이며, 최저한세는 50% 감면기간만 적용함
 - ◆ (감면대상 업종) 제조업,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 ◆ (투자누계액)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자산(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광업권 등)
 - * '24. 1. 1. 이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 ⑫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조특법§100의32)
 - ◆ (적용대상 축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만 대상
 - 단, 중견기업 등이 기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납부
 - ◆ (일몰연장) 2025.12.31.
 - ◆ (기업소득 범위 완화)
 - 기업소득 가산항목: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지주회사 제외)을 가산항목에서 제외

- * '2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 (사후관리 예외 추가)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해당 시설이 멸실, 파손되어 처분한 경우
- * '2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 (임금증가액 산정 개선)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면서, 임금 증가액은 직전사업연도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 지급 증가액으로 계산함
 - 사업연도별 임금지급액을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으로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여 상시근로자수, 임금증가액 산정기준을 일원화
- * '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임금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 (기업소득 산정방식 합리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위한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항목 중 '외국기업지배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삭제함
- * '24. 1. 1.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국제조세 분야

- ①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법령§94)
 - ◆ 이중과세 방지
 -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에 포함
 - * '23. 8. 8.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부터 적용
- ② 외국인 통합계좌 과세특례 규정 신설(법법§98의8)
 -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 *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
 - 외국법인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최종 투자자가 아니라 외국인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
 -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실질귀속자)은 원천징수 이후의 경정청구 가능
- ③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국조령§64⑤)
 - ◆ 해외지주회사 특례판정을 위한 소득금액 비율 계산식 합리화
 - 소득금액비율 계산식의 분자에 자회사 이자배당소득의 예·적금 예치에 따른 이자소득 합산(그 외 소득의 예치에 따른 이자는 배제)
 - * '24. 2. 29.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④ 비과세·면제·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법법§98의4,법법§98의5,법법§98의6)
 -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확대
 - 국기법§45의2에서 경정청구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의 기한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적용 할 수 있도록 정비

* '24. 1. 1.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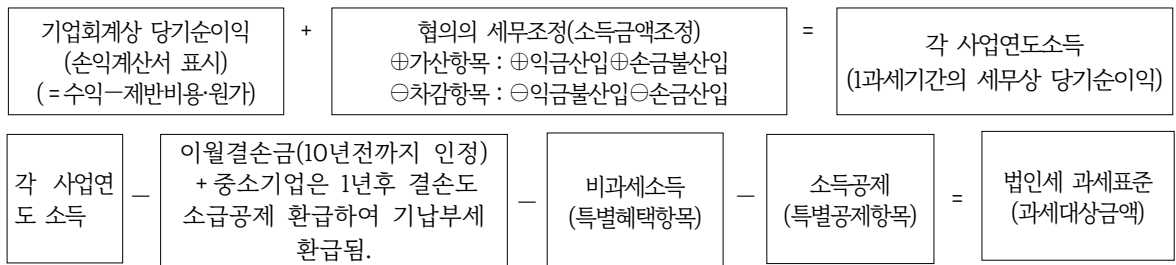
⑤ 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국기법\$26의2)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과세권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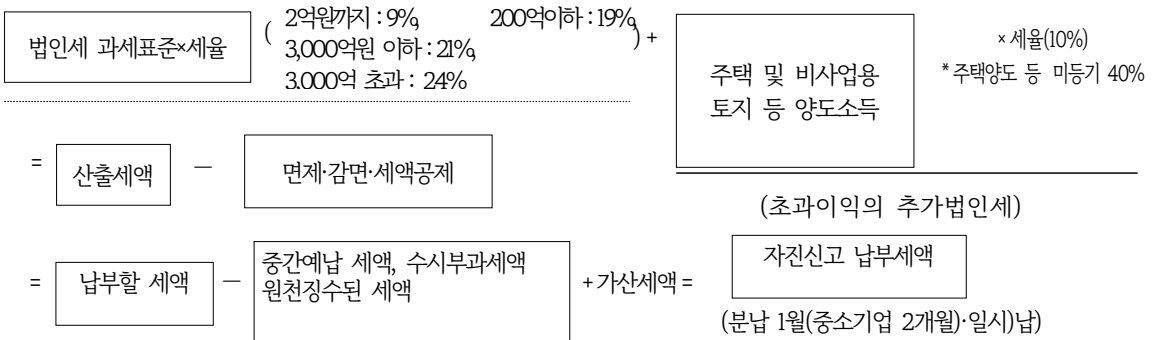
-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만료시에도 부과처분이 가능한 특례규정에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 변경시 과세당국이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까지 부과처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추가

* '24.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회계결산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조(광의의 세무조정)



1.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비교



□결산 조정(주로 기업내부의 판단·측정으로 회계처리 재무제표 반영할 거래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

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조정 항목

-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법§23)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신고조정 가능
-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29)
 -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 ③ 퇴직급여충당금(법법§33)
- ④ 대손충당금(법법§34)
-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35)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 ⑥ 법인세법 시행령§19의2①(7)부터 (13)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법령§19의2③2)
- 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법법§42③1)
- ⑧ 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차손(법법§42③2)
- ⑨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법법§42③3)
 -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2008.2.22.이후 평가분)
- ⑩ 주식등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법법§42③3)
-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법령§31⑦)

□ 신고 조정(주로 대외적 지출·구입·자금수지 거래임)

○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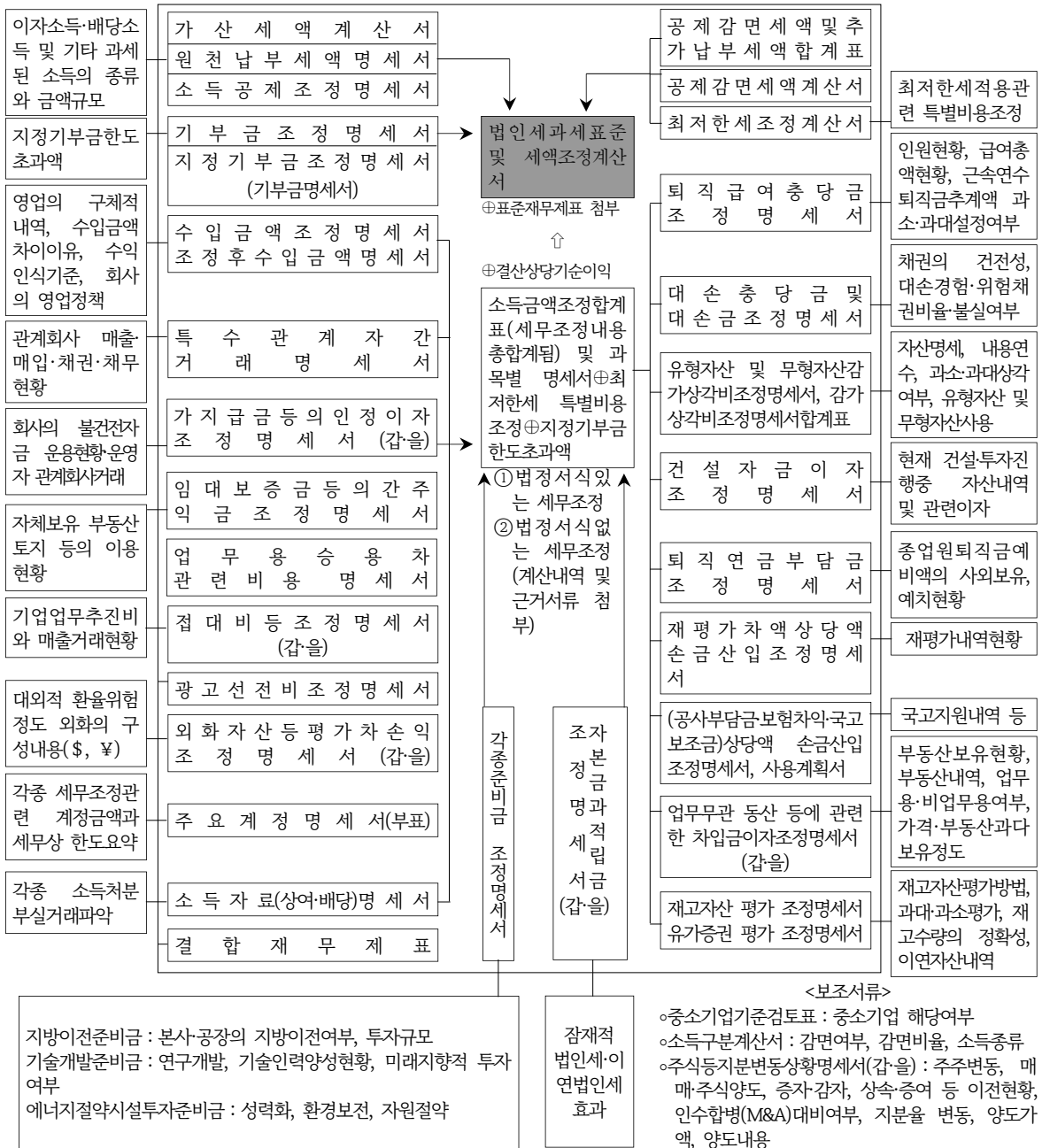
신고조정 항목

-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법§18·6호)
- ②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법령§44의2)
- ③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자산가액의 손금 산입(법령§64 ~ §66)
- ④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법§22)
- ⑤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 ⑥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법법§23)
- ⑦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법법§28①(3))
- ⑧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법§40)
-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202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사례 해설

법인세 과세표준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흐름도와 포함된 재무정보내용



1.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2003년 이전 10만원 이상, 2007년 이전 5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 "정규 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 다만,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함.
- 법인이 이러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 일반적인 재화·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가.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법 §116②, 영 §158③)

○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합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포함
 -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기령§65의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2. 현금영수증
3. 부가법§32에 따른 세금계산서
4. 법법§121 및 소득법§163에 따른 계산서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빙 인정여부》

구 분	내 용	인정여부
법 인 개 별 카 드	신용카드에 법인명칭의 당해 법인의 중업원개인명칭이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인 정
직 불 카 드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	불 인정
신 종 직 불 카 드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신용카드와 같이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	
백 화 점 카 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용사업자가 발행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카드	
선 불 카 드 (무 기 명)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카드	
포 인 트 카 드	고객에 대한 보상프로그램(reward program)의 일종으로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점수)별로 사은품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그 포인트의 누적관리를 목적으로 교부된 카드	

* 기명식 선불카드는 정규영수증으로 인정(영 § 158③)

-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출증명서류(통칙 116-158.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116②의 증명서류로 보지 아니합니다.
 -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나.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빙 수취 의무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외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붙임]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사 업 연 도						
공급받는자 (신고법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은행명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		④ 계좌번호	
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							
⑤ 일련 번호	⑥ 거래 일자	⑦ 법인명(상호)		⑨ 사업자 등록번호	⑩ 거 래 내 역	⑪ 거 래 금 액	⑫ 송 금 일 자
		⑧ 성 명					
계							

2.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사례(사업연도 2024. 1. 1~12. 31, 중소기업 아님)

□ 자 료

- ① 결산서상 수입금액 내역 : ㉠ 제품매출 : 800,000,000원 ㉡ 공사매출 : 675,000,000원
- ② 공사현장별 공사현황

공사명	공사계약 체결일	도급계약기간	도급금액	당해연도총공사비 (총공사예정비)	손익계산서상 수익계상반영액
A	2023. 11. 10	2024. 2. 1~2025. 5. 17	700,000,000	460,000,000 (600,000,000)	470,000,000
B	2024. 7. 20	2024. 8. 10~2025. 9. 30	400,000,000	160,000,000 (300,000,000)	205,000,000
계	-	-	1,100,000,000	620,000,000	675,000,000

- ③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인 기계를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음.
 - 계약일 및 인도일 : 2024. 3. 31 ◦계약금액 : 18,000,000원
 - 대금결제조건 : 2024. 3. 31 계약금 3,000,000원을 받고, 6개월 경과시마다 3,000,000원씩 5회에 나누어 받기로 함.
 - 회사는 기계매각대금총액(18,000,000원) 및 장부가액(15,000,000원)전액을 당기의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로 각각 계상하여 결산하였으며
 - 2024. 9. 30에 회수하여야 할 부불금 3,000,000원이 아직 결제되지 아니하였음.
- ④ 제품재고액 중 Y제품 8,000,000원은 타인에게 위탁판매하기 위한 위탁품(적송품)으로서 2024. 12. 31에 수탁자가 10,000,000원에 판매한 것임.
- ⑤ 2023년도 거래실적이 우수한 대리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2024년 1/4분기 중에 매출에누리 하여준 금액 5,000,000원을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함.

□ 세무조정 계산

- ① 공사수익의 계산

공사명	①도급금액	②당해사업연도말 총공사비누적액	③총공사 예정비	④진행률 (②/③)	익금산입액⑤ (①×④)	⑥회사수익 계상액	⑦조정액 (⑤-⑥)
A	700,000,000	460,000,000	600,000,000	76.6%	536,200,000	470,000,000	66,200,000
B	400,000,000	160,000,000	300,000,000	53.3%	213,200,000	205,000,000	8,200,000
계	1,100,000,000	620,000,000	900,000,000		749,400,000	675,000,000	74,400,000

-공사수익 세무조정

세무상 공사수익 : 749,400,000

장부상 공사수익 : 675,000,000

익 금 산 입 : 74,400,000(유보)

- ② 장기할부매각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 계산

- 법인이 인도기준으로 결산조정 신고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아니함.

③ 위탁판매 수입금액 조정계산

- 위탁판매액 10,000,000원은 익금산입, 원가 8,000,000원은 손금산입

④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는 매출에누리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므로 동 에누리금액을 2024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

조정내용 정리

-수입금액에 가산할 내용 ㉗ 공사매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조정액 : 74,400,000원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사항 ㉘ 제품매출 ·매출에누리 금액(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님) : 5,000,000원	㉙ 제품매출 ·위탁판매 수입계상 누락액 : 10,000,000원
--	--

조정내용 정리사항으로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작성이 끝나면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사업연도	2024. 1. 1 ~ 2024. 12. 3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인명	(주) 안 건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수입금액 조정계산

계 정 과 목		③ 결산서상 수입금액	조 정		⑥ 수정후 수입금액 (③+④-⑤)	비 고
① 항 목	② 과 목		④ 가 산	⑤ 차 감		
매 출	제품매출	800,000,000	10,000,000	5,000,000	805,000,000	
	공사매출	675,000,000	74,400,000		749,400,000	
계		1,475,000,000	84,400,000	5,000,000	1,554,400,000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⑦공사명	⑧도급자	⑨도급금액	작 업 진 행 률 계 산			⑬누적익금 산입액 (⑨×⑫)	⑭전기말 누적수입 계상액	⑮당기회사 수입계상액	⑯조 정 액 (⑬-⑭- ⑮)
			⑩당해사업 연도말총공 사비누적액	⑪총공사 예정비	⑫진행률 (⑩/⑪)				
A	갑	700,000,000	460,000,000	600,000,000	76.6%	536,200,000	0	470,000,000	66,200,000
B	을	400,000,000	160,000,000	300,000,000	53.3%	213,200,000	0	205,000,000	8,200,000
계		1,100,000,000	620,000,000	900,000,000		749,400,000		675,000,000	74,400,000

다. 기타 수입금액

⑰ 구 분	⑱ 근거 법령	⑲ 수입 금액	⑳ 대응 원 가	비 고
위 탁 판 매		10,000,000	8,000,000	
계		10,000,000	8,000,000	

3.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율의 익금조정 개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허용)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영§88①(6), §89③)

-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면 3년간은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전 약정한 대여금에 대한 시가적용 방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도록 금전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66호 2012. 2. 28. 개정된 것) 제43조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법인세과-431, 2012. 6. 28)
- 당좌대출이자율의 3년간 의무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5, 2016.10.12.)

▣ 조정에 필요한 내용

(1) 가지급금 인정이자 배제 대상

① 미지급소득(배당소득,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규칙§44, 1호)

☞ 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며, 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text{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 \text{종합소득 총결정세액} \times \frac{\text{미지급소득}}{\text{종합소득금액}}$$

②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산한 금액(법칙§44(2))

☞ 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법칙§44(3))

- ☞ 조합원간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④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법칙 §44, 4호)
 - ☞ 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⑤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법칙 §44, 5호)
 - ☞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⑥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안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법칙 §44, 6호)
- ⑦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포함)의 대여액(법칙 §44, 7호)
- ⑧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법칙§44(7의2))
- 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법칙§44(8))

4.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사업연도 : 2024. 1. 1~2024. 12. 31)

① 총급여액 지급내역

계 정 과 목	총 급 여 액		퇴직급여지급 대상자		퇴직급여지급대상이 아닌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판매 관리비 : 임원급여	3	180,000,000			3	180,000,000
판매 관리비 : 급여수당	30	602,000,000	7	54,000,000	23	548,000,000
제 조 원 가 : 임금	110	1,678,000,000	25	233,000,000	85	1,445,000,000
	143명	2,460,000,000	32명	287,000,000	111명	2,173,000,000

② 퇴직급여충당금 내역

- ㉠ 장부상 기초잔액 : 578,000,000원
- ㉡ 총당금 부인누계액 : 38,000,000원
- ㉢ 기중 퇴직금지급액 : 104,000,000원
- ③ 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정관규정에 따른 추계액) : (111명) 1,798,000,000원
- ④ 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 (111명) 1,500,000,000원
- ⑤ 회사가 당기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 129,300,000원

□세무조정 계산

- ① 퇴직급여지급대상이 아닌자에 대한 급여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
- ② 총급여액의 5/100와 퇴직급여추계액의 0/100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한도액이 됨.

③ 한도초과액 129,300,000은 손금불산입

[별지 제32호 서식]

사 업 연 도	2024. 1. 1.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안건
	~ 2024. 12. 31.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⑬의 계)		②설정률	③한도액 (①×②)	비 고	
	2,173,000,000		5/100	108,650,000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도액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기 중 충당금 환입액	⑦충당금 부인누계액	⑧기 중 퇴직금 지급액	⑨차감액 (④-⑤- ⑥-⑦-⑧)
	578,000,000	0	0	38,000,000	104,000,000	(△) 436,000,000
	⑩추계액 대비 설정액 (⑫ × 설정률)		⑪퇴직금 전환금		⑬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 MAX(⑨-⑩-⑪, 0)	
0		0		436,000,000		0
한도초과액 계 산	⑭한도액 MIN(③, ⑬)		⑮회사계상액		⑯한도초과액 (⑮-⑭)	
	0		129,300,000		129,300,000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계정명	구 분	⑰총급여액		⑱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 인에 대한 급여액		⑲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에 대한 급여액		⑳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 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 직급여 추계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임원급여		3	180,000,000			3	180,000,000	111	1,798,000,000
급여수당		30	602,000,000	7	54,000,000	23	548,000,000	㉑「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추계액[퇴직연금미가입자의 경우 일시퇴직기준(㉒)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조비 임금		110	1,678,000,000	25	233,000,000	85	1,445,000,000		
								인원	금 액
								111	1,500,000,000
								㉒세법상 추계액 MAX(㉒, ㉑)	
계		143	2,460,000,000	32	287,000,000	111	2,173,000,000	111	1,798,000,000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5. 퇴직연금 부담금 등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 조정에 필요한 내용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법칙 §23 각호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 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영 §44의2②)
-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동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 그 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44의2④)

① 퇴직연금 등의 범위(법칙 §23)

- 손금산입 하는 퇴직연금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 퇴직보험·신탁 폐지에 따라 2011. 1. 1. 이후 납입하는 퇴직보험·신탁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 되지 않습니다(법령 §44의2②, 2010. 12. 30. 개정).
 -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은 익금에 환입하지 아니하며, 보험료 등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2010. 12. 30. 영 부칙 §19)

②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¹⁾ 과 보험수리기준추계액 ⁽²⁾ 중 큰 금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³⁾	=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A)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A)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B)	=	손금산입 한도액(C)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 합계액 ⁽⁴⁾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B) ⁽⁵⁾	=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D)
손금산입범위액 = (C)와 (D)중 적은 금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법령\$44에 따른 손금불산입액과 법령\$44의2③에 따른 손금 산입액 제외)을 말합니다.
 - 다음 ㉠, ㉡의 합계액(법령\$44에 따른 손금불산입액과 법령\$44의2③에 따른 손금 산입액 제외)
 - ㉠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 제1항 제1호)
 -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장부상 기말잔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설정자의 설정 전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말 부인누계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 합계액=기초 퇴직연금예치금 등 -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기초퇴직연금충당금 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 퇴직연금충당금 등 손금부인누계액 - 기중 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
- ③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 퇴직연금부담금 등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예치금 등으로 자산 계상한 경우에는 결산조정에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 세무계산상(신고조정)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영\$44④을 적용하되,
 -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영\$44의2③단서)

6.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① 사업연도말 현재 전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 제외) 퇴직급여추계액(정관 규정

- 에 따른 추계액) : 100,000,000원
- ② 사업연도말 현재 전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 제외) 퇴직급여추계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 50,000,000원
 - ③ 퇴직급여충당금 - 전기이월액 : 20,000,000원,
당기설정액 : 10,000,000원(한도초과액 없음)
 - ④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 : 60,000,000원
 - ⑤ 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퇴직연금부담금 : 70,000,000원
→ 이중 당해사업연도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은 15,000,000원임.
 - ⑥ 당기회사불입액 : 25,000,000원
 - ⑦ 당기에 회사가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 : 35,000,000원

□세무조정 계산

- ① 퇴직급여 추계액 : 100,000,000원[$\text{MAX}(100,000,000\text{원}, 50,000,000\text{원})$]
- ②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 30,000,000원 (20,000,000 + 10,000,000)
- ③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①-②) : 70,000,000원
- ④ 이미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 : 45,000,000 (60,000,000-15,000,000)
- ⑤ 손금산입 한도액(③-④) : 25,000,000
- ⑥ 기말현재 퇴직연금예치금등 : 80,000,000(70,000,000-15,000,000 + 25,000,000)
- ⑦ 손금산입대상 퇴직연금부담금 등 : 35,000,000 (⑥-④)
- ⑧ 한도액 : 25,000,000 (⑤와 ⑦ 중 작은 금액)
- ⑨ 한도초과액 : 10,000,000(35,000,000-25,000,000)

[별지 제33호 서식]

사업연도	2024. 1. 1. ~ 2024. 12. 31.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주)안건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

① 퇴직급여추계액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⑥ 퇴직부담금 등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 (①-⑤)
	② 장부상 기말잔액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설정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④ 당기말 부인 누계액	⑤ 차감액 (②-③-④)	
100,000,000	30,000,000			30,000,000	70,000,000

⑦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 (⑰)	⑧ 손금산입 한도액 (⑥-⑦)	⑨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⑱)	⑩ 손금산입범위액 (⑧과 ⑨ 중 작은 금액)	⑪ 회사손금계상액	⑫ 조정금액 (⑩-⑪)
45,000,000	25,000,000	35,000,000	25,000,000	35,000,000	△10,000,000

2.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의 계산

가.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계산

⑬ 퇴직연금 예치금 등 계 (⑳)	⑭ 기초퇴직연금 총당금 등 및 전기말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⑮ 퇴직연금충당금 등 손금부인 누계액	⑯ 기중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	⑰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 (⑭-⑮-⑯)	⑱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⑬-⑰)
80,000,000	60,000,000		15,000,000	45,000,000	35,000,000

나.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의 계산

⑲ 기초퇴직연금예치금 등	⑳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㉑ 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	㉒ 퇴직연금예치금 등 계 (⑲-⑳+㉑)
70,000,000	15,000,000	25,000,000	80,000,000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7.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사업연도 : 2024. 1. 1~12. 31(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임))

- ① 사업연도 : 2024. 1. 1~12. 31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임)
- ② 매출채권 등 내역
 - 받을 어음 : 41,000,000(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 포함)
 - 외상매출금 : 154,000,000(부가가치세 14,000,000 포함)

계 : 195,000,000
- ③ 대손충당금 계정내역
 - 장부상 기초충당금 2,300,000(전기부인액 300,000포함)
 - 다라(주) 당기 대손금상계액(12/31) : 400,000(미확정 대손금 100,000포함)
 - 당기 손금계상액 50,000 (전기이월 대손충당금잔액 1,900,000원을 당기 손금산입할 금액에 충당하고 잔액만 손금계상함)
- ④ 대손실적을 : 0.9%

□세무조정계산

- ① 매출채권 등 총액계산
 - 받을 어음 21,000,000원(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원 제외)
 - 외상매출금 154,100,000원(당기대손금상계액중 미확정대손금 100,000원을 포함)

계 175,100,000원
- ② 한도액 계산=1,751,000원(175,100,000원×1/100)
 - 설정율 : 1%(일반법인)와 대손실적율 0.9% 중 큰 비율임
- ③ 환입 또는 보충할 금액 계산
 -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2,300,000원
 - 충당금 부인 누계액(-) : 300,000원
 - 당기대손금 상계액(-) : 400,000원

계 : 1,600,000원
- ④ 과다환입 또는 보충액 계산
 - 보충액 : 1,900,000원
 - 보충할 금액 : 1,600,000원

계 : 300,000원..... 과다보충액 발생
- ⑤ 조정내용 정리
 - 당기대손금중 미확정대손금 100,000원 손금불산입
 - 한도초과액 199,000원 손금불산입
 - * 회사 설정액(1,900,000 + 50,000)-세무상 한도액(1,751,000)
 - 과다보충액 300,000원 손금산입
 - * 회사 보충액(1,900,000)-세무상 보충할 금액(1,600,000)

[별지 제34호 서식]

사업연도	2024. 1. 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법인명 (주)안건	
	2024. 12. 31.		사업자등록번호	

1. 대손충당금조정

손금 산입액 조정	①채권잔액 (②의 금액)	②설정률			③ 한도액 (①×②)	회사계상액			⑦한도초과액 (⑥-③)
		(㉑) 1(2) ----- 100 (✓)	(㉒) 실적률 ()	(㉓) 적립 기준 ()		④당기계상 액	⑤보충액	⑥계	
	175,100,000				1,751,000	50,000	1,900,000	1,950,000	199,000
익금 산입액 조정	⑧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⑨기중 충당금 환입액	⑩충당금 부인 누계액	⑪당기대손금 상계액 (②⑦의 금액)	⑫당기 설정충당금 보충액	⑬환입할 금액 (⑧-⑨-⑩- ⑪-⑫)	⑭회사 환입액	⑮과소환입· 과다환입(△) (⑬-⑭)	
	2,300,000		300,000	400,000	1,900,000	△300,000		△300,000	
채권 잔액	⑯계정과목	⑰채권잔액의 장부가액	⑱기말현재 대손금부인누 계	⑲합계 (⑰+⑱)	⑳충당금 설정제외 채권	㉑채권잔액 (⑰-⑲)	비고		
	받을 어음	41,000,000		41,000,000	20,000,000	21,000,000			
	외상매출금	154,000,000	100,000	154,100,000		154,100,000			
	계	195,000,000	100,000	195,100,000	20,000,000	175,100,000			

2. 대손금조정

⑳ 일자	㉑ 계정 과목	㉒ 채권 내역	㉓ 대손 사유	㉔ 금액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손금계상액			비고
					㉕ 계	㉖ 시인액	㉗ 부인액	㉘ 계	㉙ 시인액	㉚ 부인액	
12.31	외상매출금	안건(주)	시효소멸	400,000	400,000	300,000	100,000				시효 미완성 100,000
계				400,000	400,000	300,000	100,000				

3.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㉛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익금에 산입할 금액			㉜상계후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㉛-㉜)	비고
	㉝「법인세법」 제34조제 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 하여야 할 금액 Min(㉝,㉞)	㉞「법인세법」 제34조제 4항에 따라 익금에 산 입하여야 할 금액 Mas[0, (㉝-⑩-⑪)]	㉟차액 Max (0,㉝-㉞)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8.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구 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법§36)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법§37)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법§38)
대상 법인	다음의 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 받는 내국법인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전기사업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한국철도공사법 ㉦ 농어촌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환경정책기본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전기·도시가스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 ㉤ 수도사업	모든 법인
손금 산입 요건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목적에 지출	수요자 또는 편익자로부터 금전·자재를 교부받아 사업시설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하거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유형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
손금 산입 범위액	소요된 국고보조금 전액	소요된 공사부담금 전액	소요된 보험차익 전액
사용 시 익금 산입	㉠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다음의 금액과 상계 $\text{일시상각충당금에 대한 감가상각비} = \text{손금에 산입되는 감가상각비} \times \frac{\text{일시상각충당금}}{\text{자산의 취득가액}}$ ㉡ 사업용 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상계 후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산입		
미 사용시 익금 산입	㉠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익금산입 ㉡ 사용 전 폐업 또는 해산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익금산입 (단,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 제외)		
기타	• 세무조정계산서에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가능 •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		

- ※ 2008.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국고보조금을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용기한을 연장함(공사부담금은 2006.1.1.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
- ※ 2011.1.1.이후 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분부터는 먼저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과세이연 적용 가능
단,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

9.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종 류	손금산입 대상	손금산입 범위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도서관·박물관·미술관운영 법인 ◦ 지방문화원·예술의전당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가맹단체로 기획재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고시하는 체육단체 ◦ 공익법인으로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8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전액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법인은 당해 사업과 당해 시설 안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에 한함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 * 인구 30만명 이하이고 국립 대학교 병원·사립 대학교 운영병원이 없는 지역(조특칙 별표8의6)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100/100
(나) 자본확충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 (\$104의3) * 2009. 5. 21. 이후 준 비금 손금계상 분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 - '21.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계상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적은 금액 손금산입 ① 해당사업연도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전액 ② 신증자본증권 잔액과 후순위채권 잔액 합계액의 10%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 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 (\$104의12) * 2010. 1. 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신용회복목적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연도 손실보전준비금 손금 계상액

10. 업무무관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① 지급이자 총액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	비 고
20%	5,000,000*	9,125,000,000	* 채권자불분명 시채이자임(원천징수세액 1,375,000원 포함)
13%	7,800,000	21,900,000,000	
10%	15,000,000	54,750,000,000	
계	27,800,000	85,775,000,000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

- 2024. 4. 20 가지급금 7,000,000
- 2024. 8. 15 가지급금 회수 5,000,000

③ 토지계정 : 임대용 나대지 20,000,000(취득가액, 해당기간 : 2024. 1. 1~2024. 12. 31)

④ 사업연도 : 2024. 1. 1~2024. 12. 31

세무조정 계산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3,625,000원(상여)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징수세액 1,375,000(기타사외유출)

②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22,800,000 \times (7,300,000,000 + 1,097,000,000) / (76,650,000,000) = 2,497,737$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2,497,737(기타사외유출)

[별지 제26호 서식(갑)]

(앞쪽)

사업연도	2024. 1. 1 ~ 2024. 12. 3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	법인명	(주) 안건
	사업자등록번호			

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①지급이자	적수				⑥차입금 (=⑩)	⑦ ⑤와 ⑥중 적은 금액	⑧손금불산입 지급이자 (①×⑦÷⑥)
	②업무무관 부동산	③업무무관 동산	④가지 급금 등	⑤계 (②+③+④)			
22,800,000	7,300,000,000		1,097,000,000	8,397,000,000	76,650,000,000	8,397,000,000	2,497,737

2.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계산

⑨ 이자 율	⑩지급 이자	⑪차입금 적수	⑫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등		⑮건설자금이자 등		차 감	
			⑬지급 이자	⑭차입금 적수	⑯지급 이자	⑰차입금 적수	⑱지급이자 (⑩-⑬-⑯)	⑲차입금적수 (⑪-⑭-⑰)
20%	5,000,000	9,125,000,000	5,000,000	9,125,000,000			0	0
13%	7,800,000	21,900,000,000					7,800,000	21,900,000,000
10%	15,000,000	54,750,000,000					15,000,000	54,750,000,000
합계	27,800,000	85,775,000,000	5,000,000	9,125,000,000			22,800,000	76,650,000,000

[별지 제26호 서식(을)]

(앞쪽)

사업연도	2024. 1. 1 ~ 2024. 12. 3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조정명세서(을)	법인명	(주) 안건
	사업자등록번호			

		①연월일	②적요	③차변	④대변	⑤잔액	⑥일수	⑦적수
1. 업무무관부동산의 적수		2024. 1. 1	전기이월	20,000,000		20,000,000	365	7,300,000,000
	계			20,000,000		20,000,000	365	7,300,000,000
2. 업무무관동산의 적수								
	계							
3. 가지급금 등의 적수	⑧ 가지급금 등의 적수	2023. 4. 20	가지급	7,000,000		7,000,000	117	819,000,000
		2023. 8. 15	회수		5,000,000	2,000,000	139	278,000,000
	계			7,000,000	5,000,000	-	256	1,097,000,000
4. 그 밖의 적수	⑨ 가수금 등의 적수							
		계						
5. 자기자본 적수계산								
	계							
⑩대차대조표 자산총계	⑪대차대조표 부채총계	⑫자기자본 (⑩-⑪)		⑬사업연도 일수		⑭적 수		

11.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법령§33)

○법인은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다음의 서류를 법인 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 감가상각시부인 명세서
-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취득자산·취득일·취득가액 내역〉

○일반자산(내용연수 4년 선택)

-P·C 등(2024. 1. 1 취득) : 6,000,000

-화물차(2024. 8. 1 취득) : 4,500,000

-상각율(내용연수 4년) : 0.528

○건축물

-일반건축물(내용연수 40년 선택, 2024. 2. 25 취득) : 31,000,000

-공장건축물(내용연수 20년 선택)

·공장 등(2024. 1. 27 취득) : 17,200,000

·창고 등(2024. 7. 25 취득) : 8,000,000

○업종별 자산

-업종(18 : 인쇄업) : 내용연수 5년 선택

·기계장치(2024. 1. 27 취득) : 17,200,000

·기계장치(2024. 7. 2 취득) : 10,000,000

·상각율(내용연수 5년) : 0.45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4)] <개정 2019.3.20>

사업 연도	2024. 1. 1.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법인명	(주) 안 건
	~ 2024. 12. 31.		사업자등록번호	

① 자산구분	코드	② 합계액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⑥ 무형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③ 건축물	④ 기계장치	⑤ 기타자산		
재무 상태표 상가액	⑩기말현재액	01	93,900,000	56,200,000	27,200,000	10,500,000	
	⑩감가상각누계액	02	16,316,000	1,810,000	10,150,000	4,356,000	
	⑩미상각잔액	03	77,584,000	54,390,000	17,050,000	6,144,000	
⑩상각범위액	04	15,940,616	1,770,416	10,012,200	4,158,000		
⑩회사손금계상액	05	16,316,000	1,810,000	10,150,000	4,356,000		
조정 금액	⑩상각부인액 (⑩5-⑩4)	06	750,584	189,584	195,000	366,000	
	⑩시인부족액 (⑩4-⑩5)	07	375,200	150,000	57,200	168,000	
	⑩기왕부인액 중 당 기손금추인액	08					
⑩신고조정손금계상액	09						

210mm×297mm [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별지 제20호 서식(1)]

사업연도	2024. 1. 1 ~ 2024. 12. 31.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자산구분	① 종류 또는 업종별		총계	비품	차량	제조업	제조업
	② 구조(용도) 또는 자산별			p.c	화물차	인쇄업	인쇄업
	③ 취득일			2024. 1. 1	2024. 8. 1	2024. 1. 27	2024. 7. 2
④ 내용연수 (신고기준)				4	4	5	5
상각 계산의 기초 가액	재무상태표 자산가액	⑤ 기말현재액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⑥ 감가상각누계액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⑦ 미상각잔액(⑤-⑥)	23,194,000	3,000,000	3,144,000	9,500,000	7,550,000
	⑧ 회사계산감가상각비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⑨ 자본적지출액						
	⑩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⑪ 전기말부인누계						
⑫ 가감계(⑦+⑧+⑨-⑩+⑪)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⑬ 일반상각률 · 특별상각률				0.528	0.528	0.451	0.451
상각범위 액계산	당기산출 상각액	⑭ 일반상각액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⑮ 특별상각액					
		⑯ 계(⑭+⑮)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취득가액	⑰ 전기말현재취득가액					
		⑱ 당기회사계산증가액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⑲ 당기자본적지출액					
	⑳ 계(⑰+⑱)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㉑ 잔존가액(㉒×,)		1,885,000	300,000	225,000	860,000	500,000	
㉒ 당기상각시인범위액 [⑯, 단 ⑯-⑱ ≤ ㉑인 경우 ㉑]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㉓ 회사계산상각액(⑧+⑨)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㉔ 차감액(㉓-㉒)			△225,200 561,000	△168,000	366,000	△57,200	195,000
㉕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							
조정액	㉖ 상각부인액(㉔+㉕)		△225,200 561,000	△168,000	366,000	△57,200	195,000
	㉗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 (㉑, 단, ㉑ ≤ △㉔)						
㉘ 당기말부인누계액(㉑+㉖-㉗)			561,000		366,000	0	195,000
당기말의 제상각액	㉙ 당기의제상각액(△㉔ - ㉗)						
	㉚ 의제상각누계(㉑+㉙)						
신고조정감가 상각비계산 (2013.12.31. 이전취득분)	㉛ 기준상각률						
	㉜ 종전상각비						
	㉝ 종전감가상각비한도[㉜-{㉜-(㉜-㉛)}]						
	㉞ 추가손금산입대상액						
㉟ 동종자산 한도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							
신고조정감가 상각비계산 (2013.1.1. 이후취득분)	㊱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준내용연수						
	㊲ 기준감가상각비한도						
㊳ 추가손금산입액							
㊴ 추가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누계(㉚-㊳-㊴)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2)] <개정 2012.2.28>

(앞 쪽)

사업 연도	2024. 1. 1. ~ 2024. 12. 31.		유형·무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안건	
	자 산 구 분	① 종류 또는 업종명	총계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② 구조(용도) 또는 자산명						
	③ 취득특		2024. 2. 25	2024. 1. 27	2024. 7. 25		
④ 내용연수(기준·신고)			40	20	20		
상 각 계 산 의 초 상 각 비 가 액	재무상태표	⑤ 기말현재액	56,200,000	31,000,000	17,200,000	8,000,000	
	자산가액	⑥ 감가상각누계액	1,810,000	800,000	960,000	50,000	
		⑦ 미상각잔액(⑤-⑥)	54,390,000	30,200,000	16,240,000	7,950,000	
	회사계산	⑧ 전기말누계					
		⑨ 당기상각비	⑩ 당기말누계(⑧+⑨)	1,810,000	800,000	960,000	50,000
			⑪ 전기말부인누계				
	자본적 지출액	⑫ 당기지출액					
		⑬ 합계(⑪+⑫)					
	⑭ 취득가액(⑦+⑩+⑬)		56,200,000	31,000,000	17,200,000	8,000,000	
	⑮ 일반상각률·특별상각률			0.025	0.050	0.050	
	상 각 범 위 액 계 산	당기산출 상각액	⑯ 일반상각액	1,770,416	710,416	860,000	200,000
			⑰ 특별상각액				
			⑱ 계(⑯+⑰)	1,770,416	710,416	860,000	200,000
⑲ 당기상각시인범위액 {⑱, 단 ⑱ ≤ ⑭ - ⑧ - ⑪ + ⑮ - 전기 ⑳}			1,770,416	710,416	860,000	200,000	
⑳ 회사계상상각액(⑨+⑫)		1,810,000	800,000	960,000	50,000		
㉑ 차감액(㉑-㉒)		△150,000 189,584	89,584	100,000	△150,000		
㉒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							
조 정 액	㉓ 상각부인액(㉑+㉒)	△150,000 189,584	89,584	100,000	△150,000		
	㉔ 기왕부인액 중 당기 손금 추인액 (㉔, 단 ㉔ ≤ △㉑)						
부 인 액 누 계	㉕ 전기말부인액누계(전기 ㉕)	0	0	0	0		
	㉖ 당기말부인액누계(㉕+㉔- ㉔)	189,584	89,584	100,000	0		
당 기 말 의 제 상 각 액	㉗ 당기의제상각액(△㉑ - ㉔)						
	㉘ 의제상각의누계(전기 ㉘+㉗)						
신 고 조 정 감 가 상 각 비 계 산 (2013.12.31 이전 취득분)	㉙ 기준상각률						
	㉚ 종전상각비						
	㉛ 종전감가상각비 한도[㉚ - {㉙ - (㉖ - ㉕)}]						
	㉜ 추가손금산입대상액						
㉝ 동종자산 한도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							
신 고 조 정 감 가 상 각 비 계 산 (2014.1.1 이 후 취득분)	㉞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㉟ 기준감가상각비 한도						
	㊱ 추가손금산입액						
㊲ 추가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누계 (㉖-㉟-㊱)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종질지 80g/m²]

12.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 특례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을 허용하였습니다.(선택사항)

① 신고조정 요건 및 대상자산

- 적용요건 : K-IFRS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 대상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
 -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유형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즉시상각의제에 해당되는 자산은 신고조정할수 없다 (법인세과-222, 2012. 3. 28.).

② 신고조정 적용방법

- 결산서상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추가하여 신고조정 한도까지 손금산입 가능

③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 2013.12.31. 이전 취득 자산(아래의 '동종자산'을 말함)
 - K-IFRS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감가상각비(이하 “종전감가상각비”라 함)가 법인세법§23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법법§23②(1))
 - (손금산입한도) 다음의 ㉠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23②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함(법령§26의2②)

㉠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 기준상각률
 - * 기준상각률 계산 :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합계액 ÷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의 평균비율(법령 § 26의2④(1))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 미상각잔액 × 기준상각률
 - * 기준상각률 :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액 합계액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의 평균비율(법령 § 26의2④(2))

**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로 하고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법령 § 26⑥단서 준용)

㉠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기준상각률)-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기준상각률은 ㉠의 정액법과 같이 적용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23①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23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 상각비 합계액

* 기준상각률은 ㉠의 정률법과 같이 적용

○ 2014.1.1. 이후 취득 자산(법법§23②(2), 법령§26의3①)

-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23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법법§23②(2))

- (손금산입한도) 기준감가상각비 적용대상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비는 ㉠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23②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에 따른 금액과 ㉢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함(법령§26의3②)

13.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① 기부금계정의 금액은 104,500,000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법정기부금 : 2024. 4. 1. 지출한 이재민구호금품 5,000,000원

2024. 8. 1. 지출한 사립대학 시설비 10,000,000원

2024. 9. 1. 지출한 국립대학병원 연구비 40,000,000원

㉡ 일반기부금 : 48,000,000원 [2025. 1. 31 만기 지급어음 5,000,000원 포함]

㉢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1,500,000원

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178,500,000원

③ 세무조정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41,500,000원 ⇒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 포함됨.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39,000,000원

④ 「법인세법」 §13, 1호 규정의 이월결손금 : 135,000,000원

⑤ 사업연도는 2024. 1. 1~2024. 12. 31이며 일반 영리법인임.

□ 세무조정 계산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계산>

① 50%한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279,000,000 (178,500,000 + 41,500,000 - 39,000,000) + (5,000,000 + 10,000,000 + 40,000,000 + 43,000,000*)

* 어음으로 지급한 5,000,000원은 2024년 기부금이므로 손금부인

㉒ 손금산입한도액 : 72,000,000 = (279,000,000 - 135,000,000) × 50%

㉓ 한도초과액 : △17,000,000(한도미달) = 55,000,000 - 72,000,000

② 10%한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㉔ 손금산입한도액 : 8,900,000 = (279,000,000 - 135,000,000 - 55,000,000) × 10%

㉕ 한도초과액 : 34,100,000(한도초과) = 43,000,000 - 8,900,000

사업연도	2024. 1. 1.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안건
	~ 2024.12.31.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279,000,000	⑤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 ㉓]	55,000,000
②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산금 합계액	135,000,000	⑥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④-⑤)×0, ③]	
③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55,000,000	⑦ 한도초과액[(③-⑥)×0]	89,000,000
④ 한도액 {(①-②)×50%}	72,000,000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해당 금액		⑪ 손금산입액 MIN(⑨, ⑩)	
⑩ 한도액 (①-②)×30%	26,700,000	⑫ 한도초과액[(⑨-⑩)×0]	

3.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⑬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43,000,000	⑮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⑭-⑮)×0, ⑬]	8,900,000
⑭ 한도액(⑧×10%, 20%)	8,900,000	⑰ 한도초과액[(⑬-⑮)×0]	34,100,000
⑮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⑭, ㉓)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⑱ 기부금 합계액(③+⑨+⑬)	98,000,000	⑲ 손금산입 합계(⑥+⑪+⑮)	63,900,000	⑳ 한도초과액 합계(⑱-⑲)=(⑦+⑫+⑰)	34,100,000
------------------	------------	------------------	------------	-------------------------	------------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연도	기부금 종류	㉓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㉔ 기 공 제 액	㉕ 공제가능 잔액(㉓-㉔)	㉖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㉗ 차기이월액 (㉓-㉖)
합계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34,100,000		34,100,000		34,100,000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34,100,000		34,100,000		34,100,000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

사업연도	기부금 종류	㉘ 지출액 합계금액	㉚ 해당 사업연도 손금산입액	㉛ 차기 이월액 (㉘-㉚)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55,000,000	55,000,000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43,000,000	8,900,000	34,100,000

14.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다음은 2024. 1. 1.~2024. 12. 31.의 (주)가나의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 자료임.

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제조·도매 : 섬유)
- ㉕ 매출액 : 제조·도매 : 500억(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00억 포함)
수 출 : 300억
잡수익 중 매출액 해당액 : 10억

②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한 사항

- ㉔ 일반관리비 중 기업업무추진비 : 1억5천만원
 - ┌ 1회 3만원 초과 지출분 : 1억원(신용카드 등 사용분 92백만원*)
 - └ 1회 3만원 이하 지출분 : 5천만원(신용카드 등 사용분 40백만원)
- *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에는 2024년 8월 중 지출한 문화기업업무추진비 1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㉕ 광고선전비 및 회의비 중 기업업무추진비 : 22백만원
(전액 1회 3만원초과 지출분으로서 신용카드사용분 : 2천만원)

- ㉖ 건설가계정(건물)중 기업업무추진비 : 57백만원
 - ┌ 1회 3만원 초과 지출분 : 43백만원(전액 신용카드 사용)
 - └ 1회 3만원 이하 지출분 : 14백만원(신용카드사용분 12백만원)
- ⇒ 당해연도에 건물을 준공하여 감가상각비 계상
- ┌ 취득가액 : 40억원
 - └ 감가상각비 계상액 : 4천만원

□ 세무조정 계산

① 세무상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 :

$$219,000,000 = (150,000,000 - 8,000,000^*) + (22,000,000 - 2,000,000^*) + 57,000,000$$

* 8,000,000 및 2,000,000은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직부인된 금액임

②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 162,600,000원(152,600,000원+10,000,000원)

- ㉔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152,600,000원 (36,000,000 + (i) + (ii))

(i) 일반수입금액 기준

$$\begin{aligned} & \bullet 110,000,000 + (71,000,000,000 - 50,000,000,000) \times 3/10,000 \\ & = 116,300,000 \end{aligned}$$

(ii) 특수관계거래 수입금액 기준

$$\begin{aligned} & \bullet \{ 110,000,000 + (81,000,000,000 - 50,000,000,000) \times 3/10,000 \} - (i) \\ & \times 10\% = 300,000 \end{aligned}$$

㉔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 10,000,000원

• $\text{Min}[10,000,000, (152,600,000 \times 20\%)]$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 $219,000,000 - 162,600,000 = 56,400,000$

③ 세무조정

○ 3만원 초과 기업업무추진비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10,000,000*원

-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 다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기업업무추진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귀속자(불분명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 1회 3만원초과 지출분중 신용카드 미사용액(일반관리비 8,000,000, 광고선전비 2,000,000)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56,400,000원

-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 한도초과액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한 금액(142,000,000원 + 2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건물의 가액을 감액할 금액은 없음

[사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이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산계정에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의 처리방법

※ 위 사례의 경우 기업업무추진비한도 초과액이 172,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금액 162,000,000원을 10,000,000원 초과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함.

〈세무 조정〉

○ 10,000,000원은 자산계정인 건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중인 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순으로 자산가액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함.

○ 건물의 당해 사업연도 상각비중 자산감액처리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함.

⇒ 당초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부인에 따른 자산감액처리시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된 금액과 상계됨.

$$\text{상각비} \times \frac{\text{자산감액처리잔액}}{\text{건물(감가상각전 장부가액)}} = \text{손금불산입액}$$

- 건물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액 계산

(당해 연도) $40,000,000 \times 10,000,000 / 4,000,000,000 = 100,000$ ……손금불산입(유보)

(2차 연도) $40,000,000 \times 9,900,000 / 3,960,000,000 = 100,000$ ……손금불산입(유보)

(3차 연도 이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손금불산입)

[별지 제23호서식(갑)] <2024. 3. 22 개정>

(앞 쪽)

사업연도	2024. 1. 1. ~ 2024. 12. 31.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주)안건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구 분			금 액	
①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229,000,000	
②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10,000,000	
③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①-②)			219,000,000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④ $\frac{1,200\text{만원}}{\text{(중소기업 3,600만원)}} \times \frac{\text{해당 사업연도 월수(12)}}{12}$		36,000,000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	30,00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20/10,000	80,00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9,300,000	
		⑤소계	119,300,000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	30,00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80,00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6,300,000	
		⑥소계	116,300,000	
	⑦수입금액 기준	(⑤-⑥)×10/100	300,000	
⑧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④+⑥+⑦)			152,600,000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⑨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10,000,000	
	⑩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⑨과 (⑧×20/100) 중 작은 금액)		10,000,000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136조 제6항)	⑪ 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5,000,000	
	⑫ 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⑪과 (⑧×1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5,000,000	
⑬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합계(⑧+⑩+⑫)			167,600,000	
⑭한도초과액(③-⑬)			51,400,000	
⑮손금불산입한도 내 기업업무추진비지출액(③과 ⑬ 중 작은 금액)			167,600,000	

[별지 제23호서식(을)] <2023. 3. 20 개정>

사업연도	2024. 1. 1 ~ 2024. 12. 31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		법인명	(주)안건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수입금액명세					
구 분	①일반수입금액	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③합 계 (①+②)		
금 액	71,000,000,000	10,000,000,000	81,000,000,000		
2.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④계 정 과 목		일반관리비중 접 대 비	광고선전비, 회의비 등	건설가계정 (건물)	합 계
⑤계 정 금 액		150,000,000	22,000,000	57,000,000	229,000,000
⑥기업업무추진비계상액 중 사적 사용경비					
⑦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⑤ - ⑥)		150,000,000	22,000,000	57,000,000	229,000,000
⑧신 용 카 드 등 미 사 용 금 액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⑨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⑩총 초과금액			
	국외지역 지출액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	⑪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⑫총 지출액			
	농어민 지출액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⑬송금명세서 미제출금액			
		⑭총 지출액			
기업업무추진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⑮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8,000,000	2,000,000	0	10,000,000
	⑯총 초과금액	100,000,000	22,000,000	43,000,000	165,000,000
⑰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⑨ + ⑪ + ⑬ + ⑮)		8,000,000	2,000,000	0	10,000,000
⑱접 대 비 부 인 액 (⑥ + ⑰)		8,000,000	2,000,000	0	10,000,000

1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사례

㉑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A법인*(12월말 법인)이 '24.1.10.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4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법령 § 42②)에 해당하지 않음

- '24년 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용사용비율 70%, 대표자 사적 사용분 30%로 확인된 경우
-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 하였으나 총 차량관련 비용은

60,000,000원임.

* 200,000,000원 ÷ 5년 = 40,000,000원

○ (세무조정)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감가상각비 8백만원 한도)

- 차량유지 비용 세무조정
 - 차량 관련 유지비 사적 사용액 6,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 차량유지비용(20,000,000원) × 사적사용(30%) = 6,000,000원
-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미계상 세무조정 : 4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 200,000,000원 ÷ 5년 = 40,000,000원
 - 차량 감가상각비 사적 사용액 12,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 감가상각비(40,000,000원) × 사적사용(30%) = 12,000,000원
 - 업무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 (감가상각비(40,000,000) × 70%) - MIN[(40,000,000원 × 70%), 상각한도(8,000,000)]
 - ** 한도 초과분은 누적잔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까지 이월 공제

㉔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B법인(12월말 법인)이 '24.1.10. 2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4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4,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7,000,000원임
 -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 § 42②)의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 20,000,000원 ÷ 5년 = 4,000,000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7,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천5백만원(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4,000,000원 = 7,000,000원

㉕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C법인*(12월말 법인)이 '24.1.10.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4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 § 39③)의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 200,000,000원 ÷ 5년 = 40,000,000원
- (세무조정) 1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인정하므로 차량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용을 안분계산하여 초과분 세무조정

- 차량유지비 세무조정
 - 간주업무사용비율 : 25%*
 - * 1천만원 초과비용(15,000,000) / 총비용(60,000,000)
 - 차량관련 유지비 손금 부인액 15,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 총 유지비(20,000,000)-[총 유지비(20,000,000)×간주업무사용비율(25%)]
-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4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차량 감가상각비 사적 사용액 30,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 감가상각비(40,000,000원)-[감가상각비(40,000,000)×간주업무사용비율(25%)]
- 업무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 【감가상각비 (40,000,000)×25%】 -Min 【(40,000,000원×25%), 상각한도(8,000,000)】
 - ** 한도 초과분은 누적잔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까지 이월 공제

16. 조정한목별 소득처분 사례

조정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수입금액	◦인도한 제품 등의 매출액 가산 ◦동 매출원가	익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전기매출가산분 당기결산상 매출 계상 ◦동 매출원가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가산 ◦전기 수입금액가산분 당기결산 수입계상	익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접 대 비	◦한도초과액 ◦법인명의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당기미지급기부금 ◦전기미지급기부금당기지급액 (당기 한도액계산시 포함)	"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당기가지급 계상분 (한도액계산시 포함) ◦전기 가지급 계상분 당기 비용처리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익금산입	배 당		
	◦사용인(임원 포함)	"	상 여		
	◦법인 또는 사업영위 개인	"	기타사외유출		
	◦전 각 호 이외의 개인	"	기타소득		
소득세 대납액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처분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 하거나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아니 하여 익금산입한 금액	"	기타사외유출		

건설자금이자	◦건설중인 자산분 ◦건설완료 자산중 비상각 자산분	손금불산입 "	유 보 "		
	◦전기부인 유보분중 당기건설이 완료되어 회사 자산계상			익금불산입	유 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원천세 제외 금액(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	상 여(대표자) 기타사의유출		
수령자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원천세 제외 금액(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	상 여 기타사의유출		
비업무용 부동산등 지급이자	◦비업무용 부동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의유출		
각종 준비금	◦범위초과액 ◦과소환입 ◦과다환입 ◦전기범위초과액중 환입액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유 보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유 보 " 유 보
	◦세무조정에 의해 환입하는 준비금	익금산입	유 보		
퇴직급여충당금	◦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 지급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유 보 "
퇴직보험료	◦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대손충당금	◦범위초과액 ◦전기범위초과액 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재고자산	◦당기평가감 ◦전기평가감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당기평가증 ◦전기평가증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유 보 유 보	손금산입 손금산입	유 보 유 보
국고보조금등	◦잉여금으로 계상한 국고 보조금 등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계상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기 타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감가상각비	◦당기부인액 ◦기왕부인액중 당기 용인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기타	◦법인세 등 ◦벌과금, 과료 ◦임원퇴직금 범위초과액 ◦법인세 환급금 및 이자	손금불산입 " "	기타사의유출 " 상 여	익금불산입	기 타
	◦영 §88①8호-§88호의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익금산입	기타사의유출		
	◦잉여금증감에 따른 익금 및 손금산입	익금산입	기 타	손금산입	기 타

17.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해당액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수 입 배 당 금	3,000,000	수입계상 누락분
재 고 자 산 평 가 감	770,000	재고자산 과소평가액
퇴 직 급 여 총 당 금	840,000	한도초과액
대 손 총 당 금	134,000	한도초과액
연 구 및 인 력 개 발 준 비 금	560,000	한도초과액
인 정 이 자	130,000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 금 과 공 과	654,000	토지매입에 다른 취득세
잡 비	75,000	별과금
건 설 자 금 이 자	2,340,000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토지)
법 인 세 등	2,000,000	중간예납 등

②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해당액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재 고 자 산 평 가 감	380,000	전기 손금불산입 유보분중 당기사용분
감 가 상 각 비	1,340,000	전기부인누계액중 당기용인액
수 입 이 자	22,000	국세환급금 이자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 인 명	
2024. 1. 1 ~ 2024. 12. 31		(주) 안 건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①과 목	②금 액	③소득처분		④과 목	⑤금 액	⑥소득처분			
		처분	코드			처분	코드		
수 입 배 당 금	3 000 000	유보	40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380 000	유보	10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770 000	"	400	감 가 상 각 비	1 340 000	"	100		
퇴 직 급 여 총 당 금	840 000	"	400	수 입 이 자	22 000	기타	200		
대 손 총 당 금	134 000	"	400						
연 구 및 인 력 개 발 준 비 금	560 000	"	400						
가 지 급 금 인 정 이 자	130 000	상여	100						
세 금 과 공 과	654 000	유보	400						
잡 비	75 000	기타 사외유출	500						
건 설 자 금 이 자	2 340 000	유보	400						
법 인 세 등	2 000 000	기타 사외유출	500						
합 계	10 503 000			합 계	1 742 000				

18. 최저한세 조정계산 사례

- A법인 : 농공단지입주 중소기업(조특법 §64)
- 입주일 : 2022. 5. 1
- 감면비율 : 50%
- 사업연도 : 2024. 1. 1~12. 31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250,000,000원
 - [과세사업 관련 소득 : 30,000,000원]
 - [감면사업 관련 소득 : 220,000,000원]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5,000,000원(전액 과세사업 관련 소득임)
- 차감소득 : 255,000,000원
 - [과세사업 관련 소득 : 35,000,000원]
 - [감면사업 관련 소득 : 220,000,000원]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1,000,000원(최저한세적용 제외대상)

□세무조정 계산

◦ 다음의 1과 2중 많은 금액 17,850,000원에서 최저한세적용 배제대상 세액공제액 1,000,000원을 차감한 16,8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각종 감면 후 세액 ⇨ 16,177,451원

·과세표준 : 255,000,000원

·산출세액 : 255,000,000×세율

·감면세액 : 농공단지입주기업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과세표준 × 감면율(50%)

$$13,372,549 = 31,000,000 \times 220,000,000 / 255,000,000 \times 50 / 100$$

·각종 감면후 세액 : 16,177,451원

* 최저한세적용 제외대상인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1,000,000원 미차감 금액임.

2. 최저한세 (감면전 과세표준의 7%) ⇨ 17,850,000원

감면전 과세표준	최저한세율	최저한세
차 가 감 소 득 계 255,000,000	× 7% =	17,850,000원

19.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사례

- 다음 자료에 의하여 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봅시다.
- 자 료
- 사업연도 : 2024. 1. 1~12. 3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건설자금이자	4,520,000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
수입배당액	1,000,000	수입계상누락분(미수금입)
재고자산평가감	770,000	재고자산평가감액임
퇴직급여충당금	840,000	한도초과액임
대손충당금	694,000	한도초과액임
퇴직금	220,000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인정이자	130,000	대표자 가지금금 인정이자
세금공과	654,000	토지매입에 따른 취득세
잡비	75,000	벌과금임
미지급기부금	2,340,000	전기 손금산입 유보분임
법인세 등	2,000,000	손금불산입
합 계	13,243,000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전기대손부인액	380,000	대손부인액중 회수된 상각채권추심이익 계상액
재고자산평가감	4,110,000	전기손금불산입 유보분중 당기사용해당분
감가상각비	1,340,000	전기부인누계액중 당기용인액
수입이자	22,000	국세환급금이자
대손금	2,720,000	소멸시효완성된 외상매출금
합 계	8,572,000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생략

《기타 내역》

① 법인세 공제후 당기순이익	200,000,000원	⑥ 정규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90,000원
②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5,000,000원	⑦ 중간예납법인세	15,000,000원
③ 이월결손금(5년 미경과)	2,000,000원	⑧ 원천납부법인세	3,000,000원
④ 비과세 및 소득공제	없 음	⑨ 조정후 수입금액	3,000,000,000원
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0,000원		

□조정계산 내역

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 당해연도 해당사항 없음.

②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작성·계산

- 과세표준 207,671,000

- 산출세액 : $200,000,000 \times 9\% + 7,671,000 \times 19\% =$ 19,457,490

- 공제감면세액①에 해당하는 ⑤항을 동서식(121)에 기재

사업 연도	2024. 1. 1. ~ 2024. 12.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②법인등록번호	110111-1234567
③법인명	(주)안건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홍길동	⑥전자우편주소	
⑦소재지			
⑧업태	제조	⑨종목	기초화학물
⑩사업연도	2024. 1. 1. ~ 2024. 12. 31.	⑪주업종코드	241102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인구분	①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정구분	①외부 2.자기	
⑮종류별구분	중소	일반				당첨업체	⑯외부감사대상	①여 2.부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기업	당첨업체			
영리법인	상장법인	11	71	81	91	⑰신고구분	①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중도폐업신고 5. 경정청구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기타법인	③0	73	83	93			
비영리법인	60	74	84	94	50			
⑱법인유형별구분					코드	⑲결산확정일		
⑳신고일						㉑납부일		
㉒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분	여	부	구분	여	부
㉓주식변동	1	②	㉔장부전산화	①	2
㉕사업연도외제	1	②	㉖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②
㉗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②	㉘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①	2
㉙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②	㉚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㉛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②	㉜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1	②
㉝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1	②	㉞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	②
㉞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	②			

구분	법인세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㉓수입금액	(3,000,000,000)			
㉔과세표준	207,671,000			
㉕산출세액	19,457,490			19,457,490
㉖총부담세액	19,457,490			19,457,490
㉗기납부세액	18,000,000			18,000,000
㉘차감납부할세액	1,457,490			1,457,490
㉙분납할세액				
㉚차감납부세액				
㉛조정번호			성명	
㉜조정자관리번호		㉝조정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㉞예입처	은행 (본)지점
	㉟예금종류	
	㊱계좌번호	예금

신고인은「법인세법」제60조 및「국세기본법」제45조, 제45조의 2, 제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수수료 없음
------	--	--------

사업연도	2024. 1.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주)가나
	~ 2024. 12. 31.		사업자등록번호

①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⑩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200 000 000
	⑩ 소득조정액		
	⑩① 익금산입	02	13 243 000
	⑩② 손금산입	03	8 572 000
	⑩④ 차가감소득금액 (⑩① + ⑩② - ⑩③)	04	204 671 000
	⑩⑥ 기부금한도초과액	05	5 000 000
	⑩⑦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54	
⑩⑧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⑩④ + ⑩⑥ - ⑩⑦)	06	209 671 000	

⑬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9		
⑭ 차감납부할세액 (⑬ - ⑫ + ⑬)	30	1 290 490	

② 과세표준 계산	⑩⑧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⑩⑧ = ⑩⑦)		209 671 000
	⑩⑨ 이월결손금	07	2 000 000
	⑩⑩ 비과세소득	08	
	⑩⑪ 소득공제	09	
	⑩⑫ 과세표준 (⑩⑧ - ⑩⑨ - ⑩⑩ - ⑩⑪)	10	207 671 000
⑩⑬ 선박표준이익	55		

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⑬ 등기자산	31	
	차익 ⑬ 미등기자산	32	
	⑬⑦ 비과세소득	33	
	⑬⑧ 과세표준 (⑬ + ⑬⑦ - ⑬⑧)	34	
	⑬⑩ 세율	35	
	⑬⑪ 산출세액	36	
	⑬⑫ 감면세액	37	
	⑬⑬ 차감세액 (⑬⑫ - ⑬⑬)	38	
	⑬⑭ 공제세액	39	
	⑬⑮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가산세제외)	58	
	⑬⑯ 가산세액(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⑬⑰ 가감계 (⑬⑮ - ⑬⑭ + ⑬⑯ + ⑬⑰)	41	
	⑬⑱ 수시부과세액	42	
	⑬⑲ ()세액	43	
	⑬⑳ 계 (⑬⑰ + ⑬⑱)	44	
⑬㉑ 차감납부할세액 (⑬⑱ - ⑬㉑)	45		

③ 산출세액 계산	⑬⑳ 과세표준 (⑬⑰ + ⑬⑱)	56	207 671 000
	⑬㉑ 세율	11	19%
	⑬㉒ 산출세액	12	19 457 490
	⑬㉓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제96조)	13	
	⑬㉔ 세율	14	
	⑬㉕ 산출세액	15	
	⑬㉖ 합계 (⑬㉒ + ⑬㉕)	16	19 457 490

⑥ 미환류소득	⑬㉗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59	
	⑬㉘ 세율	60	
	⑬㉙ 산출세액	61	
	⑬㉚ 가산세액	62	
	⑬㉛ 이자상당액	63	
	⑬㉜ 납부할세액 (⑬㉙ + ⑬㉚ + ⑬㉛)	64	

④ 납부할 세액 계산	⑬㉝ 산출세액 (⑬㉒ = ⑬㉕)		19 457 490	
	⑬㉞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17	250 000	
	⑬㉟ 차감세액	18	19 207 490	
	⑬㊱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19		
	⑬㊲ 가산세액	20	90 000	
	⑬㊳ 가감계 (⑬㉟ - ⑬㉞ + ⑬㊲)	21	19 290 490	
	기납부세액	⑬㊴ 중간예납세액	22	15 000 000
		⑬㊵ 수시부과세액	23	
		⑬㊶ 원천납부세액	24	3 000 000
		⑬㊷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25	
		⑬㊸ 소계 (⑬㊴ + ⑬㊵ + ⑬㊶ + ⑬㊷)	26	18 000 000
		⑬㊹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⑬㊺ 합계 (⑬㊳ + ⑬㊸)	28	18 000 000	

⑦ 세액계	⑬㊻ 차감납부할세액 (⑬㊳ + ⑬㊴ + ⑬㊵)	46	1 290 490
	⑬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	57	
	⑬㊽ 분납세액계 산범위액 (⑬㊼ - ⑬㊽ - ⑬㊾ - ⑬㊿ + ⑬)	47	
	⑬㊾ 분납할세액	48	
	⑬㊿ 차감납부세액 (⑬㊻ - ⑬㊼ - ⑬㊽)	49	1 290 490

20. 2024. 12. 31일자 법인결산과 세무신고를 위한 국세청 고시 환율·세무환율 (재정환율)

통 화(Currency)			고 시 환 율		비 고
			2024. 12. 31. 현재	2023. 12. 29. 현재	
미 국	달러	USD	1470.00	1289.40	
일 본	엔	JPY	936.48	912.66	100엔당
유 로	유로	EUR	1528.73	1426.59	
(독 일)	마르크	DEM	EUR통화	EUR통화	
(프랑스)	프랑	FRF	"	"	
(이탈리아)	리라	ITL	"	"	
(벨기에)	프랑	BEF	"	"	
(오스트리아)	실링	ATS	"	"	
영 국	파운드	GBP	1843.67	1641.79	
캐 나 다	달러	CAD	1023.96	974.64	
스 위 스	프랑	CHF	1626.38	1526.82	
홍 콩	달러	HKD	189.30	165.06	
스 웨 덴	크로네	SEK	133.23	129.00	
호 주	달러	AUD	913.68	880.08	
덴 마 크	크로네	DKK	204.98	191.38	
싱 가 폴	달러	SGD	1081.08	976.86	
중 국	위안	CNH	201.27	180.84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9.11	8.36	100루피아당
태 국	바트	THB	43.00	37.62	
쿠 웨 이 트	디나르	KWD	4770.56	4195.22	
말레이시아	링기트	MYR	329.23	279.85	
노 르 웨 이	크로네	NOK	129.62	126.41	
뉴 질 랜드	달러	NZD	828.27	816.45	
사우디아라비아	리알	SAR	391.43	343.85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디르함	AED	400.22	351.07	
바 레 인	디나르	BHD	3896.62	3420.25	

※ 외화자산·부채평가 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사업연도 종료 일 전일의 거래실적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말함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환율조회')에서 조회 가능

- 기준환율 : 미화의 외국환은행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환율
- 재정환율 : 미화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

2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① 재무상태표

㉠ 2024. 1. 1~12. 31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법인명	(주) 안 건	
사업연도	2024. 1. 1~12. 31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I. 유동자산	01	182,000,000	I. 유동부채	229	113,000,000
II. 비유동자산	80	388,000,000	II. 비유동부채	284	8,000,000
			부채총계(I + II)	333	121,000,000
			III. 자본금	334	100,000,000
			IV. 자본잉여금	337	78,000,000
			V. 자본조정	348	△39,000,000
			VII 이익잉여금	372	310,000,000
			자본총계 (III + VI+V+VII)	382	449,000,000
자산총계(I + II)	333	570,000,000	부채와 자본총계	383	570,000,000

㉡ 2024. 1. 1~12. 31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법인명	(주) 안 건	
사업연도	2024. 1. 1~12. 31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I. 유동자산	01	188,000,000	I. 유동부채	229	108,000,000
II. 비유동자산	80	552,000,000	II. 비유동부채	284	33,000,000
			부채총계(I + II)	333	141,000,000
			III. 자본금	334	100,000,000
			IV. 자본잉여금	337	78,000,000
			V. 자본조정	348	△64,000,000
			VI. 이익잉여금	372	485,000,000
			자본총계(III + IV)	382	599,000,000
자산총계(I + II)	333	740,000,000	부채와 자본총계	383	740,000,000

② 세무조정결과 소득증가로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은 다음과 같음.

·법인세 500,000원 ·지방소득세 40,000원

③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은 다음과 같음.

·'04년 1월~12월 4,000,000원('05~'06년에 3,500,000원을 공제하였으며, 미공제액 500,000원이 남아있음)

④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기말잔액과 당기 소득금액 조정내역

과목 또는 사항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계산서(을) 전기말금액	당기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 액	처 분	금 액	처 분
공사수입조정	5,000,000	3,500,000	유 보	5,000,000	유 보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		5,000,000	기타사외유출		
외화평가차손	4,000,000	200,000	유 보		
가지금인정이자		900,000	상 여		
건설자금이자	800,000	100,000	유 보		
중소기업투자준비금한도초과	2,200,000			1,000,000	유 보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300,000	900,000	유 보		
대손충당금한도초과	700,000			700,000	유 보
재고자산평가감	400,000	600,000	유 보	400,000	유 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부인액	3,000,000			2,000,000	유 보
토지취득세	260,000	240,000	유 보		
벌과금		270,000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등		3,300,000	기타사외유출		
계	16,660,000	15,010,000		9,100,000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

과 목	기초잔액	당기중의 증감		기말잔액	작성참고자료
		감 소	증 가		
자 본 금	직전기 본표상의 기말잔액	감 자	증 자	기말 B/S상 잔액	재무상태표
자본잉여금	"	당 기 감 소 액	당 기 발 생 액	기말 B/S상 금액	"
이익잉여금	"	"	당 기 발 생 액	"	"
자본조정계정	"	"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 명세서(을)계	"	감 소 총 액	증 가 총 액	기 말 잔 액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손금미계상 법인세 등	"	당 기 납 부	당 기 미 계 상 액	좌 동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당초 계상액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과목	기초잔액	당기중의 증감		기말잔액	작성참고자료
		감 소	증 가		
제작	직전기본표상 의 기말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 익금산입분중 익금불산입 유보 ○전기 손금불산입분중 손금 산입 유보 ○전기손금산입(△)분중 손금 불산입유보(△) ○전기 익금불산입(△)분중 익금산입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익금산입 유보(+) ○손금불산입유보(+) ○손금산입유보(△) ○익금불산입유보(△) 	기초잔액-당 기감소 + 당 기증가	소득금액 조 정합계표 중 유보처분 금 액

[별지 제50호서식(갑)] <2022.3.18 개정>

사업연도	2024.1.1 ~ 2024.12.3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주)안건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I.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①과목 또는 사항		코드	②기초잔액		당기증감		⑤기말잔액	비고				
					③감소	④증가						
자본금및 이익잉여금 의 계산	1. 자본금	01	100,000,000				100,000,000					
	2. 자본잉여금	02	78,000,000				78,000,000					
	3. 자본조정	15	△39,000,000			△25,000,000	△64,000,000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6										
	5. 이익잉여금	14	310,000,000			175,000,000	485,000,000					
	6. 계	20	449,000,000			150,000,000	599,000,000					
	7.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 계	21	16,660,000		9,100,000	5,540,000	13,100,000					
손익 미계산 법인세 등	8. 법인세	22				500,000	500,000					
	9. 주민세	23				40,000	40,000					
	10. 계 (8+9)	30				540,000	540,000					
11. 차감액 계(6+7-10)	31	465,660,000		9,100,000	155,000,000	611,560,000						
II. 이월결손금 계산서												
1.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⑥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발생액					감소내역				잔액		
	⑦계	⑧일반결손금	⑨배분한도초과결손금(⑧=⑫)	⑩소급공제	⑪차감계	⑫기공제액	⑬당기공제액	⑭보전	⑮계	⑯기한내	⑰기한경과	⑱계
	03.12	4,000,000	4,000,000		4,000,000	3,500,000			3,500,000		500,000	500,000
계	4,000,000			4,000,000	3,500,000			3,500,000		500,000	500,000	
2.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⑲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⑳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	㉑ 손금산입 배분한도 초과 결손금	㉒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㉓ 합계 (㉑=㉒=㉕+㉖)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		㉖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해당액 (⑧일반결손금으로 계상) (㉑ ≥ ㉒의 경우는 "0", ㉑ < ㉒의 경우는 ㉒-㉑)					
					㉔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㉕ 이월결손금 (㉑-⑨) 중 ㉑과㉒중 작은것에 상당하는 금액						
III.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금액 수정												
㉗과목 또는 사항		㉘코드	㉙전기말 잔액		㉚기초금액 수정		㉛계(㉙+㉚)		㉜비고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업연도	2024. 1. 1. ~ 2024. 12. 3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법인명	(주) 안 건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8 1 -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세무조정유보소득계산																	
① 과목 또는 사항		② 기초잔액	당기증증감		⑤ 기말잔액 (익기초현재)	비고											
			③ 감소	④ 증가													
공사수입		5,000,000	5,000,000	3,500,000	3,500,000												
외화평가차손		4,000,000		200,000	4,200,000												
건설자금이자		800,000		100,000	900,000												
중소기업투자준비금한도초과		2,200,000	1,000,000		1,200,000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300,000		900,000	1,200,000												
대손충당금한도초과		700,000	700,000		0												
재고자산평가감		400,000	400,000	600,000	600,000												
(유형)감가상각비부인액		3,000,000	2,000,000		1,000,000												
토지취득세		260,000		240,000	500,000												
계		16,660,000	9,100,000	5,540,000	13,100,000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의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화명	2월 28일(금)	3월 4일(화)	3월 5일(수)	3월 6일(목)
미 달러 (USD)	1439.60	1458.70	1459.60	1456.00
일본 엔 (JPY)	961.82	976.37	973.42	978.26
영국 파운드 (GBP)	1814.40	1852.69	1867.56	1877.15
캐나다 달러 (CAD)	997.44	1006.66	1013.89	1015.94
홍콩 달러 (HKD)	185.10	187.55	187.79	187.35
위안화 (CNH)	197.58	199.72	200.34	200.34
유로화 (EUR)	1496.97	1529.37	1552.14	1571.24
호주 달러 (AUD)	897.73	907.17	916.26	922.52
싱가폴 달러 (SGD)	1067.79	1083.17	1091.04	1094.20
말레이시아 링기트 (MYR)	323.91	326.62	326.79	328.71